

대전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12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남대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310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보령시 C 과수원 10,9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1. 6. 25. 접수 제1340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545분의 433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6. 29. 접수 제1367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21. 6.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9억 7,500만 원을 공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 제13853호), 그 공탁서에 ‘공탁원인사실’을 ‘피고는 관련사건이 2021. 6. 3. 확정되어 관련사건 판결의 주문을 이행하고자 위 판결문상의 금액 29억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최고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반대급부의 내용’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 내지 6항,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1. 6. 25. 접수 제1340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제7항 기재 토지 중 545분의 43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6. 29. 접수 제13672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1)』

○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집행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따라서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관한 의사에 관하여 진술을 명하는 재판이라 하더라도 반대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판결(선이행판결 또는 동시이행판결)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표시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는 ‘조건 성취의 부존재’라는 하자를 주장, 증명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 성취의 부존재’ 사유는 “원고의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가 부존재 하므로(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이행불능이었다), 위 의무를 반대급부 내지 조건으로 내세운 피고의 변제공탁은 무효”라는 것인바, 이는 전소의 소송물 중 일부(원고의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후소인 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위 선결문제에 관해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이행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박진환, 판사 김병식

목 록

1. 보령시 E 대 1,881㎡
2. 보령시 C 과수원 2,595㎡
3. 보령시 F 과수원 2,311㎡
4. 보령시 G 과수원 1,121㎡
5. 보령시 H 과수원 605㎡
6. 보령시 I 과수원 1,267㎡
7. 보령시 J 과수원 545㎡
8. 보령시 K 과수원 22㎡
9. 보령시 L 과수원 2,723㎡
10. 보령시 M 과수원 168㎡
11. 보령시 N 과수원 174㎡. 끝.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는 2021. 7. 1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합병되었다(이에 따라 보령시 C 토지의 면적은 10,964㎡가 되었다).